

# 유전자 검사동의서

(병원, 의원용)

[별지 제52호 서식] <개정 2021.12.30>

유전자 검사 동의서				동의서 관리번호	
검사대상자	성명		주소		
	전화번호		생년월일		성별 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
법정대리인	성명		전화번호		관계
유전자검사기관	기관명	랩지노믹스	전화번호	(031) 628-0700	
유전자검사	목적	[ ] 1.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[ ] 2.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[ ] 3. 영양,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[ ] 4.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[ ] 5.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			
	항목				
의뢰기관 (검사목적 1과 2의 경우)	의뢰기관명				
	의뢰의사				

본인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해당 유전자 검사의 목적과 결과의 함의와 한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검사대상자 (서명 또는 인)

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상 담 자 (서명 또는 인)

※ 동일한 대상 및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아래 서명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대상자 (서명 또는 인)

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상 담 자 (서명 또는 인)

년 월 일

검사대상자 (서명 또는 인)

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상 담 자 (서명 또는 인)

## 유의사항

- 이 유전자검사의 결과는 10년간 보존되며,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등 검사대상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 및 검사동의서,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에 관한 기록물과 그 관리대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. 다만, 보존 중에 검사대상자가 다른 검사기관이나 질병관리청으로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관할 수 있습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은 동의 받은 목적 외 검사대상물 및 관련 정보를 보존·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 및 분야,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별지 제34호의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또는 별지 제41호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항목, 검사대상물의 관리 방법, 동의의 철회 방법,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,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·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,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,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: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75  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 
TEL 031-628-0700 FAX 031-628-0701

# 유전자 검사동의서

(고객용)

[별지 제52호 서식] <개정 2021.12.30>

유전자 검사 동의서				동의서 관리번호	
검사대상자	성명		주소		
	전화번호		생년월일		성별 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
법정대리인	성명		전화번호		관계
유전자검사기관	기관명	랩지노믹스	전화번호	(031) 628-0700	
유전자검사	목적	[ ] 1.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[ ] 2.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[ ] 3. 영양,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[ ] 4.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[ ] 5.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			
	항목				
의뢰기관 (검사목적 1과 2의 경우)	의뢰기관명				
	의뢰의사				

본인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해당 유전자 검사의 목적과 결과의 함의와 한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	년	월	일
검사대상자			(서명 또는 인)
법정대리인			(서명 또는 인)
상 담 자			(서명 또는 인)

※ 동일한 대상 및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아래 서명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	년	월	일
검사대상자			(서명 또는 인)
법정대리인			(서명 또는 인)
상 담 자			(서명 또는 인)

	년	월	일
검사대상자			(서명 또는 인)
법정대리인			(서명 또는 인)
상 담 자			(서명 또는 인)

## 유의사항

- 이 유전자검사의 결과는 10년간 보존되며,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등 검사대상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 및 검사동의서,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에 관한 기록물과 그 관리대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. 다만, 보존 중에 검사대상자가 다른 검사기관이나 질병관리청으로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관할 수 있습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은 동의 받은 목적 외 검사대상물 및 관련 정보를 보존·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 및 분야,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별지 제34호의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또는 별지 제41호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항목, 검사대상물의 관리 방법, 동의의 철회 방법,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,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·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,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,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: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75  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 
TEL 031-628-0700 FAX 031-628-0701

# 유전자 검사동의서

검체고유번호

(바코드)

(검사기관용)

[별지 제52호 서식] <개정 2021.12.30>

유전자 검사 동의서				동의서 관리번호	
검사대상자	성명		주소		
	전화번호		생년월일	성별	
법정대리인	성명		전화번호	관계	
유전자검사기관	기관명	랩지노믹스	전화번호	(031) 628-0700	
유전자검사	목적	[ ] 1.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[ ] 2.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[ ] 3. 영양,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[ ] 4.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[ ] 5.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			
	항목				
의뢰기관 (검사목적 1과 2의 경우)	의뢰기관명				
	의뢰의사				

본인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해당 유전자 검사의 목적과 결과의 함의와 한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검사대상자 (서명 또는 인)  
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 
상 담 자 (서명 또는 인)

※ 동일한 대상 및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아래 서명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대상자 (서명 또는 인)  
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 
상 담 자 (서명 또는 인)

년 월 일

검사대상자 (서명 또는 인)  
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 
상 담 자 (서명 또는 인)

## 유의사항

- 이 유전자검사의 결과는 10년간 보존되며,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등 검사대상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 및 검사동의서,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에 관한 기록물과 그 관리대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. 다만, 보존 중에 검사대상자가 다른 검사기관이나 질병관리청으로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관할 수 있습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은 동의 받은 목적 외 검사대상물 및 관련 정보를 보존·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 및 분야,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별지 제34호의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또는 별지 제41호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항목, 검사대상물의 관리 방법, 동의의 철회 방법,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,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·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,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,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: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